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민경 (성평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정폭력피해자의 조기 자립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
시설 입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범
위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제1항)

3. 주요내용

가.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“주거지원시
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”를 “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
피해자”로 변경(안 제4조의2 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공주택 특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사전 의견조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(2025. 10. 27 ~ 12. 8.)

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“2년”을 “1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) ①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	제4조의2(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 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 설에 <u>2년 이상</u> 입주한 피해자 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 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)	2. ----- ----- -- <u>1년 이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422